

입안계획서

1. 훈령등 제명

- 외국환거래의 검사 업무 운영에 관한 훈령(관세청 훈령 제2029호, '20.12.21.)

2. 개정사유

- 외환검사에 따른 조치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검사자료 보관 및 검사종결 절차 개정 필요
-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으로 제3자 수령 등 신고대상이 확대 됨에 따라 동 내용을 자율점검표에 반영

3. 주요 개정내용

□ 검사자료 사본 반환 규정 폐지

- 現 훈령은 세관관서에 보관하는 검사자료 원본뿐만 아니라 사본까지도 검사가 종결된 이후에 검사대상자에게 반환하도록 규정
 - * 검사결과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때 검사대상자가 이의제기 하는 경우 검사자료 반환으로 과태료 재판 수행 곤란, 검사자료 재요구에 따른 검사대상자 이중 부담 발생
- 검사대상자가 제출에 동의한 자료는 반환하지 않을 수 있도록 개정

□ 검사결과에 대한 법적 안정성 보장 및 조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검사종결 절차 개선

- 現 훈령 상 검사종결 절차는 「검사종결 → 검사결과 통지 → 관세청장 보고(재조사 지시 가능) → 검사결과 처분(의견진술 기회 부여)」 순으로 진행
 - 검사대상자에게 소명기회 부여하기 위하여 검사결과 통지하고 있으나, 관세청장 보고 전 통지하여 재조사에 따른 결과 변경으로 법적 안정성 훼손
 - 위반사실에 대한 과태료 처분 전 의견진술 기회를 주고 있음에도 이중으로 소명기회를 부여하여 불필요하게 검사종결 절차 지연

- 범칙조사로 전환하는 경우 범칙조사 시작 이전에 범칙조사 전환 예정이라는 사실과 위반행위를 통지하여 증거인멸의 동기 제공

- 검사종결 절차에서 검사결과 통지를 생략하여 現 훈령 적용 시 발생한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함

□ 증거인멸 우려 검사대상자 검사 연기신청 제외

-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검사를 시작하는 날에 검사계획 통보하도록 규정
- 검사 당일 검사계획을 통보받은 검사대상자가 검사 연기를 요청할 수 있다고 오해할 우려가 있어 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함

□ 외국환거래법령 개정 사항 반영 및 단순 용어 변경

- 외국환거래규정 개정('20.8.4)으로 제3자 수령 등 신고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동 내용을 자율점검표에 반영
-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조문번호 변경 반영, 어려운 용어 정비

4. 입안내용이 반영된 전문 및 신구조문대비표 : “붙임”

5. 시행 일자 : 2023. 1. 1.

6. 의견제출 방법

- 제출처 : 관세청 외환조사과
- 담당자 : 민병수 사무관(042-481-7931)
- 제출기한 : 2022. 12. 12.
- 제출방법
 - 외부 : E-MAIL(bsomin@korea.kr) / FAX(042-481-7949)
 - 내부 : 온나라 문서·메모보고 또는 CKP내부메일